<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4123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4.12.1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12.31

『와플대학』
정 보 공 개 서

(주)와플대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와플대학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5(갈월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2285-0031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70-4170-4105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창업상담 1588-1706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와플대학]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와플대학	와플대학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5 (갈월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1.10	2022.02.03	손정희	02-2285-0031	070-4170-4105
	법인등록번호	110111-8159075	사업자등록번호		191-88-0224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이사	손정희	와플대학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5(갈월동)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손정희	02-2285-0031	070-4170-41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이사	강보령	와플대학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5(갈월동)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손정희	02-2285-0031	070-4170-410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주식회사와플대학)가 다른 기업(와플대학협동조합)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와플대학 협동조합	와플대학	2022.02.26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79길 32	손정희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와플대학』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와 플 대 학	
상 호	와플대학 ○○ 캠퍼스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	COFFEE & WAFFLE SINCE 2008 와플대학 waffle university	출원번호(일자) 40-2023-0025723(2024.10.25) 제30류 와플 등 18건 등록일자 2024. 10. 25 출원번호(일자)40-2030-025724(2024.10.25) 제32류 과일주스 등 15건 등록일자 2024. 10. 25 출원번호(일자) 40-2023-0025725(2025.01.20) 제43류 와플전문점업 등 15건
그밖의 영업표지	WAFFLE UNIV. SINCE 2008	출원번호(일자) 40-2024-0021037(2024.02.01) 제16류 그래픽인쇄물 등 27건 출원번호(일자) 40-2024-0021038(2024.02.01) 제25류 옷핀(비귀금속제)등 26건 출원번호(일자)40-2024-0021039(2024.02.01) 제21류 빵 등 26건
		출원번호(일자) 40-2023-0067934(2023.04.17) 제28류 장난감 등 17건 등록일자 2024. 12. 30 출원번호(일자) 40-2023-0067935(2023.04.17) 제30류 거북 등 6건 등록일자 2024. 12. 03 출원번호(일자) 40-2023-0067937(2023.04.17) 제43류 와플전문점업 등 15건 등록일자 2024. 12. 30 출원번호(일자) 40-2023-0067936 제32류 과일주스 등 15건 등록일자 2024. 12. 30
	와플대학 by son	출원번호(일자)41-2014-0010286 (2014.03.18) 제43류 카페업 등 20건
		출원번호(일자)40-2024-0235741(2024.12.24) 제11류 빵 만드는 기계 등 7건

	와대쿠킹	
	와플대학	출원번호 41-2015-0021137호 제43류 와플 전문점업 등 19건 제30류 40-2015-0033162 제32류 40-2015-0033163 등록번호 41-0351355호 등록일자 2016.03.07
		출원번호(일자)40-2019-0199404(2021.06.03) 제43류 와플 전문점업 등 20건 등록일자 2021. 07. 30
	와대톡	출원번호(일자)40-2024-0187963 제09류 휴대폰 그립톡(휴대폰용 거치대)등 9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증 제 C-2014-024314호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2,631,262	1,766,541	864,721	10,372,797	956,743	764,721
2023	3,227,666	1,971,785	1,255,880	13,735,975	550,519	391,159
2024	4,485,530	3,210,403	1,275,126	15,528,718	173,469	19,245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직영점매출만을 분리하여 가맹사업만의 매출액을 계산하기 곤란하여, 위 가맹사업매출액에 가맹관련 매출액과 직영매출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손정희	대표이사	2022.01.10.~현재	[주식회사 와플대학]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강보령	이사	2023.10.13.~현재	[주식회사 와플대학] 사내이사	가맹사업 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0	4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와플대학**』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손정희	가맹사업 경영	2021.01.19.~22.02.26	와플대학(등록번호: 20141237)의 외식사업 경영(협동조합이사장)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록권자	존속기간만료일
	서비스표	2021.07.30	017583760000	와플대학협동조합	2031년07월30일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권리자에게서 위 서비스표에 관한 사용(가맹사업 계속 중)을 허락 받았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와플대학』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5년 6월 12일입니다.

2.『와플대학』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고
와플대학협동조합	와플대학	강보미	2013.4~2015.11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1319호 (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
와플대학협동조합	와플대학	강보미	2015.11~2016.11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7, 2층 (성내동,정안빌딩)	주소이전
와플대학협동조합	와플대학	강보미	2016.12~2021.01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79길 32	주소이전
와플대학협동조합	와플대학	손정희	2021.01~2022.02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79길 32	대표자변경
(주)와플대학	와플대학	손정희	2022.02.~2022.1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1, 1층 (갈월동)	가맹본부 변경
(주)와플대학	와플대학	손정희	2022.10.~현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5 (갈월동)	주소 이전

3.『와플대학』업종

영업표지	업종	
와플대학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외식	와플전문 카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와플대학』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80	377	3	380	378	2	340	336	4
서울	73	72	1	69	67	2	65	62	3
부산	10	10	0	12	12	0	13	13	0
대구	8	7	1	10	10	0	10	10	0
인천	27	27	0	28	28	0	26	26	0
광주	13	13	0	17	17	0	20	19	1
대전	18	18	0	18	18	0	14	14	0
울산	1	1	0	1	1	0	2	2	0
세종	8	8	0	5	5	0	5	5	0
경기	123	122	1	122	122	0	106	106	0
강원	16	16	0	14	14	0	13	13	0
충북	12	12	0	13	13	0	11	11	0

충남	10	10	0	13	13	0	11	11	0
전북	19	19	0	16	16	0	9	9	0
전남	8	8	0	8	8	0	7	7	0
경북	13	13	0	15	15	0	11	11	0
경남	18	18	0	15	15	0	14	14	0
제주	3	3	0	4	4	0	3	3	0

5. 최근 3년간『와플대학』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2년	343	77	6	37	29	377
2023년	377	48	4	43	42	378
2024년	378	19	4	57	40	336

6.『와플대학』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와플대학**』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매출액 (단위: 천원, VAT 별도)						비고 (6 개월 이상영업)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336	165,648	12,726	488,621	97,789	22,722	960	331
서울	62	197,378	17,806	488,621	50,742	59,830	3,962	62
부산	13	199,663	17,618	417,661	53,917	76,560	6,371	13
대구	10	189,105	15,344	262,899	26,290	96,138	8,692	10
인천	26	149,544	13,092	339,198	32,644	60,876	4,341	26
광주	19	142,326	10,190	257,363	43,648	50,051	4,123	18
대전	14	154,500	11,138	271,697	26,925	96,211	4,501	14
울산	2	해당없음(5곳미만)						2
세종	5	128,367	10,782	191,143	14,976	106,931	8,798	5

경기	106	166,569	13,416	424,804	53,411	47,462	960	103
강원	13	181,997	9,763	404,167	26,675	50,164	1,861	13
충북	11	137,179	8,729	230,893	19,145	70,982	3,122	11
충남	11	143,826	10,433	441,534	97,789	22,722	1,079	10
전북	9	138,346	7,372	206,012	13,712	88,103	3,631	9
전남	7	102,597	6,035	206,036	14,685	56,283	1,953	7
경북	11	137,344	9,044	202,487	14,127	72,432	6,585	11
경남	14	149,950	11,106	290,403	27,499	59,767	2,429	14
제주	3	해당없음(5곳미만)						3

※ 6개월 미만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연간평균매출액 환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6개월 이상 1년 미만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연환산하여 기재되었습니다.
※ 지역별 가맹점사업자 수가 5곳 미만인 곳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가맹희망자께서는 전체가맹점 수 대비 산출가맹점 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자료는 연환산 또는 제외 등의 사유로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8. [와플대학]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336	1,21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와플대학**』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바로 전 사업연도에『와플대학』광고선전비로 172,46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 손익계산서 참고)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 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전지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트윈시티 남산	02-754-449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우리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결정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김oo	와플대학 협동조합	2021 머49985	서울북부 지방법원	2022.02.09.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만원 지급	청구 취지와 동일

※ 위 사건에서 피고는 와플대학협동조합이나, 동 가맹사업을 ㈜와플대학이 영업양수하였기에, 위 정보공개서에 기재합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와플대학**』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반환조건	반환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			양도양수 605
가맹비	1. 가입비(영업표지등의 사용대가등) 2. 점포개발 및 실사 대가 3.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4.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550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양도양수비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및 행정비	275	양수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1. 개점 전 각종 와플, 커피, 음료 제조 교육과 장비습득 교육 (점주 1인 필수 및 기타 인원 1인 가능)	330	교육 이후 반환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계약이행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해당없음)

구분	내역	금액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200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200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구 분	금 액
가맹비	**550(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부가세 없음)**
합 계	**[1,080/부가세포함]**

※ 기존 가맹점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양수비는 275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4) 기타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단위 : 만원 /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합 계		**[4,395]**	**[약440]**			33m^2 (10평)기준
인테리어	별첨 2 참조	1,980	198	인테리어 공사 착수 7일 전 50%, 완공 후 1일내 잔금지급	공사 전 계약취소	3.3m$^{2)}$당(평당) 198만원 (부가세포함)
설비 및 집기	별첨 2 참조	1,715	171.5	설치 3일 전	미설치 시	주방설비 등
초도물품	별첨 2 참조	700	70	공급 7일 전	미공급 시	원자재류,소도구,와플기계, 젤라또기계 포함
별도	가맹본부 또는 자체조달	키오스크, 간판, 철거, 전기증설, 화장실, 냉난방기, 외장, 소방설비 등				매장상황이나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경우,
[330만원/부가세포함]의 인테리어 노하우 제공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초도물품비는 가맹점별 점포 규모가 상이하므로 점포 상황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철거, 전기승압, 외장공사, 가스 가설 공사, 외부 상·하수도 공사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와플대학**』가맹점 입지 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 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공중위생과 관련된 질병이 없을 것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하고, 공중위생과 관련된 질병이 없을 것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와플대학**』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 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지급대상</th><th>금액(VAT포함)</th><th>지급기한 및
방법</th><th>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th></tr>
<tr><td>광고비</td><td>가맹본부</td><td colspan="2" rowspan="2">자세한 내용은 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d rowspan="2">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td></tr>
<tr><td>판촉비</td><td>가맹본부</td></tr>
<tr><td>점포환경
개선비용</td><td>별첨 2 참조</td><td>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td><td colspan="2">Ⅶ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td></tr>
<tr><td>개점 후
교육비</td><td>가맹본부</td><td colspan="2">자세한 내용은 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d>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td></tr>
<tr><td>로열티</td><td>가맹본부</td><td>월 22만원</td><td>매월 말일
당사에 지급</td><td>영업표지의 사용대가
/후불로 반환 안됨.</td></tr>
<tr><td>지연이자</td><td>가맹본부</td><td>연12%</td><td>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td><td>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td></tr>
<tr><td>POS프로그램
사용료</td><td rowspan="2">협력업체</td><td>업체와 별도 계약</td><td>별도 약정</td><td rowspan="2">설치장비, 수량에 따라
상이</td></tr>
<tr><td>POS
유지보수비</td><td>업체와 별도 계약</td><td>별도 약정</td></tr>
</table>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설비관리	가맹점의 각종 설비관리상태 점검	필요시	문의 : (02-2285-0031)
위생청소상태관리	가맹점의 환경, 청결 등 위생상태 점검		
품질관리	가맹점 제품의 품질상태 점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와플대학**』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와플대학**』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와플대학**』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정보공개서 상의 양도양수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구 분	**금 액**(단위: 만원)
양도양수비	**275(부가세포함)**
교육비	**330(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부가세 없음)**
합 계	**[805/부가세포함]**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구 분	**금 액**(단위: 만원)
가맹비	**550(부가세포함)**
교육비	**330(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부가세 없음)**
합 계	**[1,080/부가세포함]**

4)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와플대학**』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와플대학**』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2)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와플대학**』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계약에 따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와플대학**』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와플대학**』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와플대학**』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와플 및 커피 등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해지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크림와플 등	2,300~	홈페이지 또는 공문	
아메리카노 등	2,800~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와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업종	와플대학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300m 범위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 영화관, 백화점, 기업체, 학교, 관공서, 병원, 대형슈퍼, 연금매장, 할인점, 아울렛, 버스터미널, 기차역, 지하철(기차) 역사 내,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

▸만약, 귀하의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 입점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에 대한 입점권은 귀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귀하가 거절할 경우 당사는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입점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변경된 조건에 대한 동의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 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와플대학]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8.07%	1.93%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와플대학**』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시 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2년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	

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 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2 항 및 3 항	25 조 각호 및 31 조 1 항 1 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 조 1 항 내지 6 항	
당사의 시정요구와 보수교육이 있은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16 조 7 항 8 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1 항,2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정거래처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1항 ~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지정거래처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 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7 조 2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 조 2~5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 조 1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5 조 21 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1조 4항 각호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02-2285-0031)

▸양수인은 잔여계약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도양수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와플대학**』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와플대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와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와플대학**』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10:00~22:00	주 6일/월 24일 이상 영업	문의 : (02-2285-00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매장 입점 지역의 특성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이를 변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문의 : (02-2285-0031)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완료	수시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POS사용 상태점검→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광고 성격</th><th colspan="2">부담비율</th><th rowspan="2">분담절차</th></tr>
<tr><th>본사부담</th><th>가맹점부담</th></tr>
<tr><td rowspan="3">공동광고</td><td>브랜드광고</td><td rowspan="2">광고비의 50%</td><td rowspan="2">광고비의 50%</td><td rowspan="2">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td></tr>
<tr><td>상품광고 등</td></tr>
<tr><td>가맹점모집광고</td><td>100%</td><td>-</td><td>-</td></tr>
<tr><td rowspan="2">공동판촉</td><td rowspan="2">행사에 따라 달라짐</td><td>기획비용 부담</td><td>제작비용 부담</td><td rowspan="2">행사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td></tr>
<tr><td colspan="2">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td></tr>
</table>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가맹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가맹계약서 제33조7항)

2.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가맹계약 중 제18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사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지정거래처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지정거래처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1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필수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메뉴 이외의 메뉴를 판매할 경우【냉장고 보관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이백만원(₩2,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2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제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경영주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약벌을 금 오백만원(₩5,000,000원)으로 감경한다	제33조 제4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5항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6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5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40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최초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	D-30	
종업원 구인	-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	D-25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5	
교 육 실 시	- 점주 교육	D-2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0	
홍 보	- 오픈 안내 홍보물 설치	D-7 ~ 개점전날	
개 점	- 영업시작	D-day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소요한 실내건축공사에 제외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가맹점 현황 분석→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해당없음	-	-	-	-
매출부진 경영지원	해당없음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와플대학**』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 고
신규교육	운영, 상품 교육 운영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집단강의	가맹계약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교육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와플대학**』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보수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컴플레인 개선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와플대학**』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만원, 부가세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개점 전 교육	5일	**[330]** (최대 2명)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 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보수 교육		고객 컴플레인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와플대학원	서울 강북구 삼양로179길 32
2	서울	선릉캠퍼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7
3	광주	광주도천캠퍼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83
4	서울	롯데월드캠퍼스	서울 송파구 송파나루길 15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38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49,055천원	POS매출액기준

※ 직영점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점포는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재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